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민옥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49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1월 27일

발 의 자: 이민옥, 강동길, 김기덕,
김동욱, 김성준, 김용일,
김원태, 김인제, 박강산,
박수빈, 박승진, 박영한,
박철성, 서준오, 성흠제,
소영철, 송재혁, 아이수루,
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
윤종복, 이병도, 이영실,
이용균, 이원형, 이종태,
임규호, 임만균, 임종국,
정준호, 최민규, 최재란,
한·신 의원(34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현재 출자출연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검토 결과 공개,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현행 법령에서 포함하고 있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.
- 그러나 설립 및 운영 뿐만 아니라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갈등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바,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.
- 특히 지방 정부의 장이 교체되는 경우, 출자출연기관 등의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평상시보다 더 큰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.
-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시에도 타당성 검토 및 결과의 공개, 주민 의견 수렴 등 설립에 준하는 절차와 과정을 이행하도록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시, 타당성 검토 및 결과의 공개와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설립 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(안 제5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제7조)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제7조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출자·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) ①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2항에 따른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통폐합을 하는 경우 출자·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내역과 그 사유

2. 통폐합으로 인한 출자·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등의
변동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

3.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

4.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

5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의
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
께 게재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
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영 제8조의2제1
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
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
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통폐합을 하려는 경우
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5조의2(출자·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) ①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2항에 따른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1. 통폐합을 하는 경우 출자·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내역과</p>

그 사유

2. 통폐합으로 인한 출자·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등의 변동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

3.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

4.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

5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

외에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
합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
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